#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<br> 일부개정조례안 

검토 보 고서

# 행 정 문 화 위 원 회 <br> 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 

##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 검 토 보 고 서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○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운영 효용성을 제고
○ 시설 사용기준 시간 및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기준 제시로 사용료 징수 등에 명확성 확보

## 3. 주요내용

○ 연수원 사용료(생활괸) 인상(별표)

- 공무원교육관 : 5,000 원 $\Rightarrow 10,000$ 원
- 도 민 교 육 관 : 3,000원 $\Rightarrow 5,000$ 원

○ 생활관 퇴실시간 및 연수원 1 일 사용기준 시간 제시(별표)
○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 제시(별표)

## 4. 검토의견

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운영 효용성을 제고하고 시 설 사용기준 시간 및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 용료 징수 등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며,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은
○ 연수원(생활관) 사용료 인상(별표)

- 공무원교육관 : 5,000 원 $\Rightarrow 10,000$ 원
- 도 민 교 육 관 : 3,000원 $\Rightarrow 5,000$ 원

O 생활관 퇴실시간 및 연수원 1 일 사용시간 제시(별표)

- 퇴실시간 : 다음 날 13:00까지
- 1일 사용기준 : 8시간

O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 제시(별표)

- 1 시간 초과 시 마다 당해 사용료의 $25 \%$ 가산
- 1 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

○ 금번 조례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 여 시설운영의 효용성을 제고하고, 시설 사용기준 시간 및 초과 사용료 가산 산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용료 징수 등에 있어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,

○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시설물 사용료는 2001년 조례 제정 이후 인상한 사례가 없으며, 시설물 관리비용 산정에 따라 적정하게

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 :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. 끝.
<참고자료>

■ 생활관 세입 징수액 및 사용현황

O 생활관 세입 징수액
(단위:천원)

| 년도별 | 계 |  | 생활관 |  | 비고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 |
| 계 | 554 | 16,490 | 547 | 15,900 |  |
| 2009 | 342 | 12,660 | 335 | 12,070 |  |
| 2010 | 212 | 3,830 | 212 | 3,830 |  |

O 생활관 사용현황(비합숙)

| 구 분 | 사용인원 | 비고 |
| :---: | :---: | :---: |
| 계 | 547건 865명 |  |
| 2009년 | 335건 652명 | 공무원 550명 <br> 일반인 102명 |
| 2010년 6월말까지 | 212건 213명 | 공무원 211명 <br> 일반인 2명 |

○ 생활관 일반인 사용 현황

| 구 분 | 사용기관 | 비고 |
| :---: | :---: | :---: |
| 계 | 3건 / 104명 |  |
| 2009년 | 대신정기화물 100 명 <br> (주)아이엔지에듀 2명 |  |
| 2010년 | 개인(교육 강사) 2명 |  |

回 생활관 사용료 산출자료
（단위：원）

| 난방비 | 냉방비 | 전기료 | 냉온수 | 오수찰 | 방역비 | 청소비 | 세탁비 | 쓰레기 <br> 봉투 | 화장지 | 기계ㅅㅣㅣ밍 <br> 딕군 |
| :---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
| 14,171 | 8,526 | 246 | 1,500 | 381 | 37 | 1,176 | 2,650 | 208 | 450 | 2,941 |

## 【 생활관（1실당）】

## $\square$ 항목별 세부내역

○ 1 일 난방비 $=$ 보일러 및 순환펌프 전기료＋유류대 $(23 \mathrm{KW} \times 123$ 원 $/ \mathrm{kWh}+55 \ell / \mathrm{h} \times 1,200$ 원 $/ \ell) \times 7$ 시간 $\div 34$ 실 $=14,171$ 원

01 일 냉방비 $=$ 냉온수기 및 순환펌프 전기료＋유류대 $[(44 \mathrm{~kW}) \times 123$ 원 $/ \mathrm{kWh}+30 \ell / \mathrm{h} \times 1,200$ 원 $/ \ell] \times 7$ 시간 $\div 34$ 실 $=8,526$ 원

○ 1 일 전기료 $($ 조명 전력비 $)=0.25 \mathrm{~kW} \times 123$ 원 $/ \mathrm{kWh} \times 8$ 시간 $=246$ 원
○ 1 일 냉•온수 $=1$ 인 1 박당 ：온수 $100 \ell+$ 수도 $150 \ell$ 로 적용

$$
\begin{aligned}
= & (\text { 온수가열 연료비 }+ \text { 취수전기료 }) \times 2 \text { 인 } \\
= & \left\{\left[100 \ell \times\left(50^{\circ} \mathrm{C}-15^{\circ} \mathrm{C}\right) \div 8,000 \mathrm{Kcal} / \ell \div 0.7 \times 1,200 \text { 원 } / \ell\right]+\left[0.25 \mathrm{~m}^{3} \div\right.\right. \\
& \left.\left.15 \mathrm{~m}^{3} / \mathrm{h} \times(5.5 \mathrm{~kW}+7.5 \mathrm{~kW}) \times 123 \text { 원 } / \mathrm{kWh}\right]\right\} \times 2 \text { 인 }=1,500 \text { 원 }
\end{aligned}
$$

○ 오수처리비 $=[1$ 인당 물사용량× 언간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량×kWh당 단가 $\div$ 총 지하수사용령 $+[1$ 인당 물사용량×연간 오수처리장 위탁용역비
$\div$ 총 지하수사용량 $\times 2$ 인
$=\left[0.25 \mathrm{~m}^{3} \times 40,000 \mathrm{kWh} \times 123\right.$ 원 $\left./ \mathrm{kWh} \div 11,000 \mathrm{~m}^{3}\right]+\left[0.25 \mathrm{~m}^{3} \times 3,456,000\right.$ 원 $\div 11,000 \mathrm{~m}^{3} \mathrm{~J} \times 2$ 인 $=381$ 원

○ 방역소독비 $=$ 생활관면적 $\times \mathrm{m}^{2}$ 당 소독비（ 30 일 기준）$\div 100$ 실 $\div 30$ 일

$$
=3,678 \mathrm{~m}^{2} \times 30 \text { 원 } \div 100 \text { 실 } \div 30 \text { 일 }=37 \text { 원 }
$$

$\bigcirc$ 청소비＝청소부 1 인 1 일 1 개층（ 34 실）
$=1$ 인 $\times 40,000$ 원 $\div 34$ 실 $=1,176$ 원
$\bigcirc$ 세탁비 $=1$ 인당 1 주일 1 회 세탁(침구류)

$$
=2 \text { 인 } \times 5,300 \text { 원 } \div 4 \text { 일 }=2,650 \text { 원 }
$$

$\bigcirc$ 쓰레기봉투 $=100 \ell$ 용 봉투 $\times 4$ 개 $(1$ 개 층당 $) \div 34$ 실

$$
=1,770 \text { 원 } \times 4 \text { 개 } \div 34 \text { 실 }=208 \text { 원 }
$$

0 화장지 $=1$ 실당 3 개 $(1$ 주 $) \times 600$ 원 $\div 5$ 일

$$
=3 \text { 개 } \times 600 \text { 원 } \div 4 \text { 일 }=450 \text { 원 }
$$

$\bigcirc$ 기계실, 사감실 당직근무 $=$ 근무인원 $\times$ 당직근무 단가 $\div 34$ 실

$$
=2 \text { 명 } \times 50,000 \text { 원 } \div 34 \text { 실 }=2,941 \text { 원 }
$$

$\square$ 1실당 산출금액 : 18,115(냉방) ~ 23,760 원(난방) $\fallingdotseq 20,000$ 원

## $\square$ 1인당 산출금액 : 10,000원

※ 공무원생활관은 1 실당 2 명 수용
※ 도민생활관은 1 실당 4 명 수용관계로 공무원생활관 산출금액의 $50 \%$ 를 적용하여 1 인당 5,000 원으로 정하였음

## ■ 알기쉬운 법령에 따른 조례 정비 안

제 1 조 중 "제 139 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 139 조에 따라"로 한다.
제2조제3호 중 "시설등"을 "시설 등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제1호서식에 의한"을 "제1호서식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2호서식에 의한"을 "제2호서식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 5 조제 2 호 중 "천재지변 기타"를 "천재지변이나 그 밖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 7 조제 2 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사용기간중"을 "사용기간 중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훼손 또는 망실하였을"을 "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"로 한다.

부칙 본문 단서 중 "제6조 제2항"을 "제6조제2항"으로 한다.

별표 중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한다.

